

제 호

행정처분 명령서(영업정지)

영업소의 소재지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13(신탄진동)		
영업소의 명칭	투다리식당		
성 명	전 배 정	생년월일	
위 반 사 항	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준수사항) - 청소년주류제공영업행위		
행정처분 내 용	○ 처 분 명 : 영업정지 2개월 ○ 기 간 : 2019. 09. 16 - 2019. 11. 14.까지		
이 행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귀 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● 동 처분사항을 불이행하시거나 1년 이내 동일사항으로 재 적 발 시에는 가중처벌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귀 업소는 『식품위생법』 제44조를 위반하였기 『식품위생법』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명합니다.

2019 년 09월 일

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덕구청 또는 재결청인 대전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